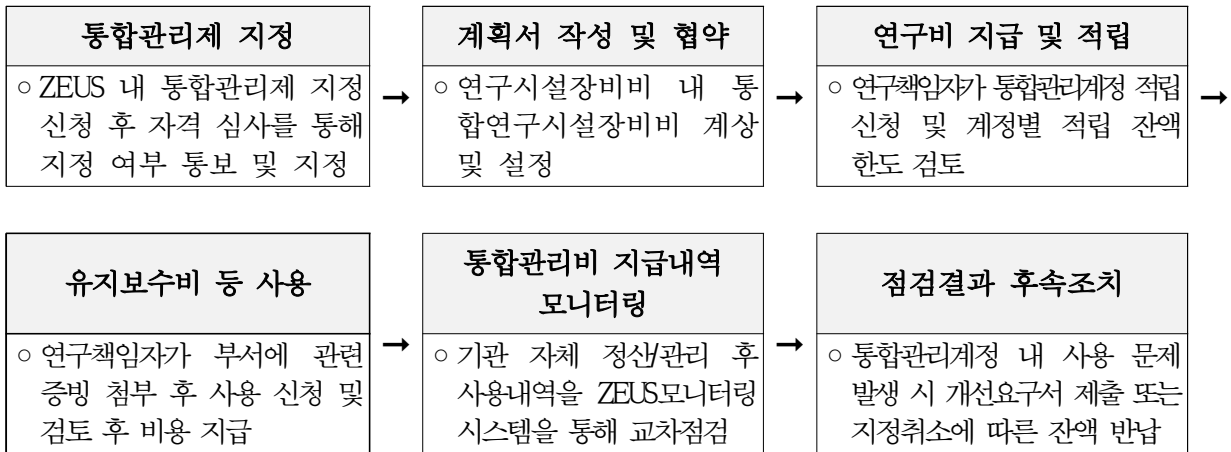


1. 업무개요

- 목적 : 연구과제로 지원된 연구시설·장비비를 별도 개설한 계정에 적립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를 유지·보수 필요시 적립한 비용을 활용
- 시기 : 2019. 6월 ~ 현재
- 관련법령 또는 근거 :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, 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-17호)
- 관련부서 : 산학협력팀

2. 업무흐름도



3. 주요내용

- 국가R&D로 도입한 연구장비를 과제 종료 이후에도 유지·보수하며 안정적으로 운영
- 연구과제에 활용할 연구시설·장비의 유지·보수, 임차·사용, 이전·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직접비의 10%이내에 통합관리(계상·지급)

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- 통합관리단위별 적립한도

통합관리단위	상세 내용	적립한도(1계정당)
연구책임자	연구자별 단독 활용시	3억원
공동활용시설	공동활용 시설·장비의 집적화와 통합운영시	7억원
연구기관	공동시설단위의 운영이 소규모 기관이거나 연구책임자·공동활용시설 단위의 계정이 중단시	10억원